

노사협의체 회의 사진대지

현장명 :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사진내용

노사협의체 회의 (25.07)



사진내용

노사협의체 회의 (25.07)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건축]

2025년 07월 **노사 협의체 회의**



1. 노사협의체 회의 ?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법규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5조(안전·보건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대상	120억 이상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작업 시	120억 이상
주기	분기 1회	월 1회	2개월 1회
구성	노사 동수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노사 동수
	근로자 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사용자 위원
성의 의결 사항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부서장 [도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행의 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11.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12.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기타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노사 동수로 구성	노사협의체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2.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시 처벌사항

16.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미실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자위반	2자위반	3자이상위반
법 제 24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협의회 미구성 500	500	500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미개최 50	250	500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위반 내용	노사협의체 및 안전보건협의체 미실시
미흡 사례	*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미흡 사례 - 법적 시행기간을 미준수
예방 대책	1) 법적 기준 준수 2) 노사협의체 2월 1회 실시

2.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시 처벌사항

17. 노사협의체 회의내용 심의의결 누락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자위반	2자위반	3자이상위반
법 제 24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 우	50	250	500
	10	20	30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위반 내용	노사협의체 회의내용 심의의결 미실시
미흡 사례	* 노사협의체 회의내용 심의의결 미흡 사례 - 노사협의체시 심의의결을 했으나 근거가 없는 경우
예방 대책	1) 법적 기준 준수 2) 회의내용 심의의결 사항 기록관리

2.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시 처벌사항

18. 노사협의체 회의내용 미기재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자위반	2자위반	3자이상위반
법 제 24조 1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500	500	500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위반 내용	노사협의체 결과를 회의록 미기재
미흡 사례	* 노사협의체 회의내용 미기재 미흡 사례 - 노사협의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의 회의 내용을 혼합 기재
예방 대책	1) 법적 기준 준수 2) 법적 노사협의체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

2.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시 처벌사항

19. 협의체 법적 구성인원 동수 부적합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자위반	2자위반	3자이상위반
법 제 24조 1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경우 (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500	500	500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예방 대책	1) 법적 기준 준수 2) 관련 법규에 따른 인원 및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동수가 같게 회의 진행 • 사용자 측 (3명) 일 때, 근로자 측 (3명) 사용자 측 인원과 근로자 측 인원이 같아야 한다.

3. 노사협의체 회의 주의사항

1. 대리참석시,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 (서명까지 받아서) 작성 후 구비
2. 사용자(근로자) 대표(위원) 선출 시, 선출근거로 **외측장 혹은 투표 실시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선출근거 보존, 관리
3. 노사협의체 진행 시 **결정된 심의의결 사항 및 협의사항에 관련된 법적 문서(서류)**들이, 정해진 기간에 맞도록 작성 및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ex.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작업환경측정 실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로자 건강진단 등)
4.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 후, **최근 시행되었던 회의 사항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인식하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 (TBM장소, 교육장, 사무실 등)
5. 노사회의의 진행 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동수로 구성 (ex. 2:2, 3:3, 4:4)
6. 실착공일 기준 이후 노사협의체 실시가 이루어져야 함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아침조회 시간 06:50시작, **열외 없음**
 휴서기 조출(05:00 ~ 14:00)시 사전허가후 실시
2. 사고사례전파 : 현장통 전달사항으로 전파, 아침조회후 TBM 실시시 각 공중별
 관리감독자 전파, **위험성평가가 들어가서 확인(근로자 참여)**
3.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신규채용자 교육전 현장통 앱 설치가입후 교육
협력사 관리감독자가 교육 진행, 필히 참석바람
미 참석시 교육 미실시, 공사투입 금지
- 2)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혈압계가 유일..)
혈압 150이상 근로자 작업투입불가, 고혈압환자 의사소견서 지참
특수건강검진대상 투입전 배치전건강검진 실시 결과 미제출시 투입불가
- 3)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① 전동기계기구 안전관리철저
 - **전동그라인더 등 회전계 전동공구 방호덮개 미설치시 사용금지**
 ② 가설전기 안전관리철저
 - 발전기 직접인출금지, 누전차단기를 통해 전기사용, 가설전기선 피복, 접지 등
- 4)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5) 근로자의 고충처리
 - **부지외곽 근로자(경계석 등) 그늘막설치요 (파라솔, 의자 등 이동가능한 그늘막설치)**
 - **아이스조끼, 쿨토시, 쿨머플러 등 폭염관련 개인물품 지급요청**

4. 금회 노사협의체 회의록

6) 그 밖에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 7월 23일 본사 대표이사님 외 현장방문, 점검 예정
- 현장 내 안전시설물 및 가설시설물 해체 금지(외부비계)
- 전망대 이동동선 외 이동금지 (주황색 웨빙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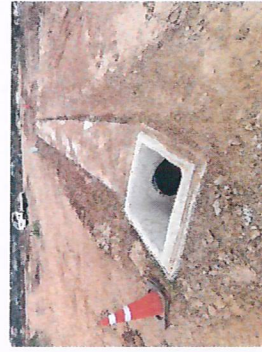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 미착용 및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즉시 작업중지 및 벌금부과,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안전관리 미준수는 조치기간내 미조치시 원청사에서 직접 조치후 투입비, 벌금 기성공제

5. 현장점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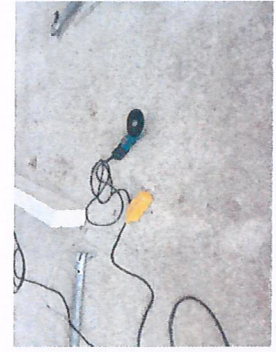
개인보호구 미착용



개구부, 단부
추락방지조치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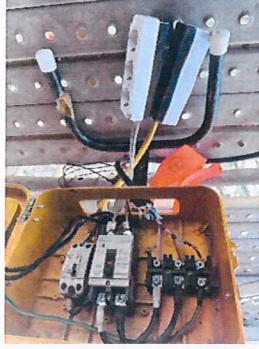


전동공구 방호조치
미흡



5. 현장점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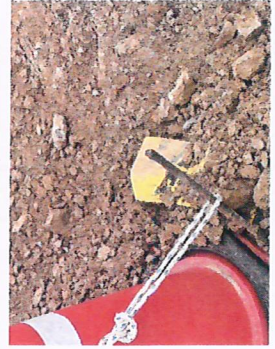
가설전기
감전사고위험



MSDS 미부착



전도시 썰임사고위험



5. 현장사진



5. 현장사진



5. 현장사진 - 전망대



5. 현장사진 - 편의점



5. 현장사진 - 관제센터



부.